



제429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위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33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위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2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위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대학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도 함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대학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29조(대학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학원의 입학·수료, 학위수여 및 학위 수여 취소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u>
③ <u>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④ ----- ---- <u>운영, 제3항에 따른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u> ----.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① <u>대학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u>

의 경우에는 명예박사학위에 한정한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3. 본인이 학위 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박사학위 또는 명예박사학위: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는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학위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① 학위 취소의 근거 마련

- 현행법 시행령 제52조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현행법 제35조²⁾에 따라 수여한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일부에서는 법 문언에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면, 엄격한 법적 해석을 통하여 입학 단계에서 발생한 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실무적으로는 입학 자체가 부정하면 그로 인한 학위도 무효라고 해석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하여 이를 학위취소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위 제도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개정안의 학위 수여 취소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 시행령상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임.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	개 정 안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① 대학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명예박사학위에 한정한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3. 본인이 학위 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하려

3)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박사학위 또는 명예박사학위: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	--

□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대학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원격대학(학사이하), 기술대학 등은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규율의 일관성 측면(일부는 법률에서 일부는 하위 법령에서 규율)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 참고로, 현행법 제34조, 제35조 등에서는 대학에 산업대학·교육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음.⁴⁾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위 수여 취소의 주체로 대학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 제52조는 대학과 함께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석사이상) 및 대학원대학도 이에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 유형인 전문대학, 원격대학(학사이하),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의 취소는 여전히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⁵⁾

② 상급 학위의 수여 취소

□ 개정안은 학위 취소 규정 뿐만 아니라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도 함께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억제하여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도 취소될 필요가 있으며, 각 학위별로 학위 취소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한번에 학위를 취소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4)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5) 법 시행령 제61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에서는 전문대학 등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하위 학위 취소를 이유로 상위 학위 모두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각 학위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개정안을 입법하더라도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은 해당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⁷⁾

□ 교육부는 학위 취소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를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학생이 해당 학위를 활용하지 않고 상급 학위과정을 진학한 경우에도 상급 학위과정을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되어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6) (예시) A대학 공학사 학위 취득, 이후 B대학 행정학사 학위 취득 → C대학 행정학 석사 학위과정 입학(B대학의 행정학사 학위만 활용, A대학 공학사 학위 취득 사실 미기재 및 미활용) 및 석사 학위 취득 → 사후적 A대학 공학사 학위 취소 → A대학 학위를 활용하여 진학하지 않은 C대학 행정학 석사 학위도 취소

7)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를 취소한다고 의제하더라도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은 해당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학위증명서 등의 발급을 계속 할 수 있음.

2. 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의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적용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례는 법 시행 당시 수여된 학위에 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여된 학위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법 시행 당시 수여된 학위에 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현재의 법적 상태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며, 당사자의 학위 취소라는 측면에서 이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측면에서 그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침해되는 이익과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간에 적절한 이익형량이 필요함.

- 개정안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학위의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국가 교육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급 학위까지 모두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기존에 없던 불이익한 처분을 개인에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과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안 제35조의2는 국민에게 침익적인 규정인 바, 법 시행 당시 기 수여된 학위에 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